300-1-090. 신문조서(金在鳳 외 19명 치안유지법 위반)

■ 1926년 4월 29일부터 1926년 7월 12일까지 新義州地方法院 豫審係에서 金在鳳·朴憲永 등 20명에 대한 예심관련 신문조서, 증인신문조서들을 편철한 문건 수록

- 문서 300-1-89에 이은 두번째 책으로 이 사건은 1926년 7월 10일 조선총독 齊藤實의 지시에 따라 朝鮮總督府 裁判所令 第8條에 의하여 경성지방법원으로 이관되었다.
- 이 편철에서 특이한 것으로는 朱鍾建의 手記로서 '共産社會란 어떠한 것인가', '共産社會에 이르는 過程', '共産社會는 어떻게 實現할 것인가', '科學的社會主義와 私有財産制度', '結論'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으며, 5월 21일에 제출된 朴憲永의 共産主義에 대한 感想錄도 있다. 朴憲永의 감상록은 4월 26일 신의주형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朴憲永의 共産主義에 대한 哲學이 담겨 있다.
- 편철순서에 의한 기록을 살펴본다.
- 朴憲永의 제6회 피고인 신문조서, 4월 29일 신의주지방법원 예심법정 진술

  4월 30일, 林元根의 제3회 피고인 신문조서

  5월 1일, 林元根의 제4회 신문조서 다음에 朱鍾建의 手記가 편철되어 있으나, 작성 일자를 알 수 없다.

  '共産社會란 어떠한 것인가'로 시작되는 이 수기는 32쪽에 달하며, 朴憲永의 感想錄과 같이 共産社會에 대한 信念이 담겨 있다.

  5월 3일, 曺利煥 제2회, 金尙珠 제3회, 林亨寬 신문조서

  5월 4일, 朴吉陽의 제3회, 申哲洙의 제2회, 趙東根의 제2회 피고인 신문조서

  5월 5일, 金景瑞의 제2회, 獨孤佺의 제3회 피고인 신문조서

  5월 6일, 獨孤佺의 제4회, 兪鎭熙의 제3회 피고인 신문조서

  5월 11일, 張善姬의 증인 신문조서

  5월 12일, 金若水 제1회, 尹德炳 제2회, 陳秉基의 제2회 신문조서

  5월 13일, 金在鳳 제3회 피고인 신문조서, 金楚仙의 증인 신문조서

  5월 14일, 徐廷禧의 보석허가결정

  5월 18일, 徐廷禧의 제2회 신문조서

  5월 19일, 朴熙淑의 증인 신문조서, 金尙珠의 피고인 신문조서

  5월 20일, 宋德滿의 제2회 신문조서

  5월 21일, 朴憲永의 共産主義에 대한 感想錄, 獨孤佺 제5회, 兪鎭熙 제4회, 金在鳳 제4회, 朱鍾建 제2회 피고인 신문조서

  5월 25일, 朴憲永의 제7회 신문조서

  5월 26일, 朱世竹(朴憲永의 妻)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5월 29일, 曺利煥의 제3회 신문조서

  5월 31일, 茅根龍夫의 증인 신문조서

  6월 4일, 金若永의 제3회 피고인 신문조서

  6월 23일, 증인 李鍾麟·車相瓚·鄭鍾鳴·孫永極·金起纏에 대한 신문조서를 종로경찰서에서 작성

  6월 25일, 金璟載·金恒俊의 증인신문이 종로경찰서에서 있었다.

  金恒俊에 대해서는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로 구금되어 있어, 종로서의 제5회 및 제7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6월 25일, 朱鍾建에 대한 보석결정

6월 28일, 증인 盧百容·印東哲에 대한 신문이 부산지법에 있었고, 조서가 작성 되었다. 7월 1일, 林元根 제5회, 金尙珠 제5회, 獨孤佺 제6회, 林亨寬 제2회의 신문조서가 신의주형무소에서 있었다.

- 이것을 끝으로 1926년 7월 10일 조선총독이 신의주지방법원장과 신의주지방법원 검사정에게, 이 사건을 경성지방법원 예심으로 이송하도록 조선총독부 재판소령 제8조에 의하여 명령하였다.
- 이 밖에 보석신청의 불허가, 구류갱신결정 등의 서류도 합철되어 있다.